

새 보육법 탁아문제 해결엔 "미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규칙 내달 시행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여성계의 요구를 반영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

업장을 여성 노동자 1천명 이상에서 5백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정부의 지원폭과 보육위원회 구성 등은 그대로 뒤 "사회복지 차원에서 탁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는 지적이 높다.

여성노동자 5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

1백~2백명업체도 탁아소설치 의무화를 서민층 맞벌이 위해 정부지원 확대시급

으며, 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80% 이상 보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여성 노동자 5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백40여 개로, 이중 직장 탁아소가 설치

돼 있는 곳은 10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5백명 이상 사업장의 탁아소 설치 의무조항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 노동자는 대체로 1백~2백명 미만의

영세업체에 고용돼 있어 사실상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은 거의 누릴 수 없다"고 지적, 재조정을 요구했다.

경제인단체협의회도 "직장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비의 80

%를 사업주가 내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조정을 요구했다. 경단협은 또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비 부담 등의 규정은 있으나 보육위원회 참여는 배제시킨 시행령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회, 기독교 탁아문제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

때 벌칙규정이 없고 △생활보호·의료부조 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빈

약함 △탁아문제 해결이 절실한 서민층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정책이 못되는 문제점을 지적, 직장탁아 확대 및 정부지원폭 확대를 위한 개정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혀주목된다.

여 91.7.19

영유아보육법 선교탁아는 종교활동으로 보장해야

기독교 탁아문제 공동대책위, 〈7·13신고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기독교 탁아문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경희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외 5명)는 8일 오전 기독교 방송국 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영유아보육법의 〈7·13 신고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종교차원의 선교탁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7·13 신고조치는 올 1월 공포된 영유아 보육법이 모든 민간 탁아시설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오는 13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간 탁아시설은 폐쇄당하며 △인허가를 받지않고 탁아를 할 경우는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징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 탁아문제 공동대책위는 최근 보사부가 각 교회의 선교탁아에 대해서도 신고할 것을 요구하자 "이는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교탄압"이라며 "교회가 선교적 입장에서 지난 15년간 지역 및 빈민아동의 선교목적으로 방치된 아동을 보호·교육해온 선교탁아는 신고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 성명서에서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일환인 선교탁아에 대한 법적 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교탁아 활동

까지 포함하려 한다면 법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7·13 신고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대책위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안으로는 방치아동 1백8만 명을 보호·교육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현실에서 △무조건 일괄신고를 요구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신고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켜 자연 폐쇄를 유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탁아활동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여성신문 만평 반쪽이